KOSHA GUIDE C - 52 - 2016

(3) 작업시에는 가급적 2인 이상이 함께 작업하도록 한다.

6.2 안전표지판 및 도로교통 표지판

- (1) 야간작업 안전수칙을 제정하여 근로자가 작업 전에 숙지하도록 게시 및 주지시 켜야 한다.
- (2) 안전표지판은 근로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야간작업에 적용되는 모든 안전표지판 및 도로교통표지판은 반사용으로 제작·설 치하고, 적절한 조명을 주어 설치위치 및 내용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도로교통표지판은 관련 법규에 맞도록 제작·설치되어 작업차량 및 일반 통행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

6.3 장비의 표지

- (1) 작업을 하는 이동식 장비에는 경광등을 부착하고 근로자가 쉽게 장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형광벨트를 하여야 한다.
- (2) 장비가 통행하는 통행로에는 점멸등을 설치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.

7. 야간작업 안전시설 기준

7.1 안전통로 설치기준

- (1) 작업시 근로자는 지정된 안전통로를 사용하여야 한다.
- (2) 안전통로에는 적절한 조명을 유지시켜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이나 돌출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